

무역상무연구
제69권
2016. 2, pp. 107~126.

논문접수일 2016. 01. 22.
심사완료일 2016. 02. 18.
게재확정일 2016. 02. 19.

우리나라 기업의 CISG 적용사례에 관한 고찰

하강헌*

-
- I. 서 언
 - II. 우리나라 기업이 계약을 위반한 사례
 - III.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입은 사례
 - IV. 요약 및 결어
-

주제어 : 대금지급의무, 대금지급조치의무, 물품수령의무, 물품의 계약적합성, 물품인도의무, 계약의 해제, 본질적인 계약위반

I. 서 언

오랜 세월동안 국제물품매매당사자들은 국제매매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준거법 지정 문제로 상호 대립하면서, 불안감을 갖고 국제매매를 행하여 왔었다. 계약상의 준거법을 모두 자국의 매매법이나 민법으로 지정하길 원했기 때문에, 매매당사자는 늘 불만과 불안 속에 물품매매를 해왔던 것이다. 국제상인이라고 하여, 세계 각국의 매매법이나 민법을 전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결국은 당해거래에서 주도권을 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기 마련이었다. 이러한 법적용의 모호함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통일된 국제물품매매법이 필요하였고, 이에 유엔에서는 1980년에 국제물품매매법¹⁾을 제정, 1988년부터 발효되었다.

* 영산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E-Mail : khha@ysu.ac.kr

오원석 교수님의 정년기념논문집에 이 논문을 게재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2004년 2월 17일자로 가입하여, 2005년 3월 1일부터 동 협약에 규율되고 있다. 금년으로서 적용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동 협약에 체약한 국가는 2015년 11월 말 현재 총 83개국에 달한다. 동 협약은 체약국 상호간에는 직접적용이 되고, 국제사법원리에 따라 체약한 국가의 법이 당해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준거법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동 협약이 간접 적용된다. 게다가 최근 국제매매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중재법정이나 법원에서는 ‘준거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 결정이 모호한 경우’ 동 협약을 준거법으로 채택하여 적용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제 동 협약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세계적인 통일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상인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이제 국제상인은 동 법을 숙지하게 되면, 거래하는 상대방국가의 매매법이나 민법을 일일이 이해하고 숙지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상인들이 동 법을 이해하고 숙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무역으로 국가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위 무역인을 양성한다는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에서조차 동 법을 가르치지 않는 대학이 허다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국제매매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동 법의 내용을 숙지시키거나 재교육시키는 곳을 찾아 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동 법에 적용된 지 어언 10년이 지나고 있는 시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동 법에 적용된 사례들을, 우리나라 기업이 동 법을 위반한 사례와 피해를 입은 사례로 구분하여 고찰하여, 우리 기업이 동 법으로 인하여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사례를 분석해보면, 역시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 또는 물품수행의무와 관련되어 있고,²⁾ 매도인은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였거나 물품인도 그 자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지체한 경우가 분쟁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³⁾ 그러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그 위반이 ‘본질적인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 또는 국제물품매매법이라 약칭한다. 본고에서 범명 표기없이 조항만 표기된 것은 전부 CISG(국제물품매매법)를 의미한다.

2)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심중석, “CISG하에서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9; 허해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 대금지급의무와 물품수령의무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35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0. 2; 허해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매수인의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 무역상무연구 제4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등이 있다.

3)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오현식,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5; 진도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 제79조와 부적합물품의 인도”, 국제거래법연구 제24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5. 7; 박남규,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물품인도 및 서류교부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

계약위반'인지, 그리하여 당해계약의 해제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II. 우리나라 기업이 계약을 위반한 사례

1. 한국의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례⁴⁾

1) 사건개요

원고인 한국의 매수인은 피고인 미국의 매도인으로부터 차량 13대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차 한대분 대금은 지급하였지만 “계약상의 매수인은 자신이 아닌 다른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잔여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매도인은 이미 한국에 운송 도착된 차량의 인도를 거절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해제의 사유를 범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고 지급한 원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이 12대분의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계약해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오히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원대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한다”라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제81조).

2) 법원조정

법원은 ‘매수인이 실제 계약상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매수인이 계약상의 매수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여 본질적인 계약위반을 범하였다는 사실 및 계약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데 실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손해액 산정금액도 제74조에 의거, 계약위반자인 매수인이 ‘예측 가능한 범위내로 한정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매도인의 운송비용 및 보관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매수인이 기 지급한 차 한대분 금액으로 한정하여, ‘상계처리토록 하는 조정을 하였다.

연구 제6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12; 이수진,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의 무에 관한 실무적 고려사항”,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강정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입증책임”, 경제법연구 제10권 1호, 한국경제법학회, 2011 등이 있다.

4) CLOUT Case 1,280 : Republic of Korea Suwon District Court (Seongnam Court) 2008Gahap 14769, 13 April 2010 : A/CN.9/SER.C/ABSTRACTS/134.

3) 조정의의

본 사건에서 한국의 매수인은 자신의 대금지급의무(제53조)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도인을 계약위반자로 몰고 갔지만, 매수인의 부당한 대금지급 거절선언은 본질적인 계약위반(제25조)으로 자신이 계약해제의 사유를 범한 것이다. 대금지급시기가 약정되지 아니한 계약에서는 대금의 지급과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와 동시에 교환되는 것이 원칙이다(제58조 제1항).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이 청구한 상계처리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참조로 CISG에는 상계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⁵⁾ PICC⁶⁾에서는 상계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⁷⁾

2. 한국의 매수인이 신용장개설에 실패한 사례⁸⁾

1) 사건개요

원고인 싱가포르의 매도인은 피고인 한국의 매수인에게 원유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매수인은 신용장(L/C)을 개설하는데 실패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원유를 제3자에게 재매각한 후, 계약가격과 대체거래가격과의 차액 및 재매각 때까지 발생한 원유 보관비 등을 매수인에게 청구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자신의 손해를 경감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이 손해경감의무를 위반하였다”라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였다”라고 반박하였다.

5) CISG에는 상계계산(처리)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본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상계를 적용한 것이다.

6)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10(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10, 이하 ‘PICC’라 칭함. PICC는 CISG를 해석 또는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즉 PICC는 CISG의 ‘Gap Filler’로서의 기능을 가진다(Zeller B., *Damages Under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217~218). PICC는 CISG와 같이 적용 가능한 국가의 상인에게 적용(직접적용 및 간접적용 : 제1조)되는 당사자가 PICC를 당해계약의 준거법으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Letterman G.G., *UNIDROIT's Rules in Practice : Standard International Contracts and Applicable Rule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p. 17).

7) PICC에서는 제8장에 상계에 관하여 5개의 조항으로서 그 요건, 통지, 내용 및 효과 등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8) CLOUT Case 1,283 : Republic of Korea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07Gahap97810, 19 December 2008 : A/CN.9/SER.C/ABSTRACTS/134.

2) 판결내용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L/C를 개설하는데 실패한 것은 매수인의 대금지급 조치의무(제5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계약해제 선언을 할 수 있다(제64조 제1항)”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매도인은 제75조에 의거 “대체거래가격과의 차액 및 보관비용 등을 매수인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매수인이 주장한 ‘매도인의 손해경감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법원은 매수인 자신이 ‘매도인이 합리적인 손해경감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⁹⁾

3) 판결의의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은 계약 및 국제물품매매법(CISG)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제53조)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 즉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의무(제54조)도 포함된다. 본 사건에서와 같은 L/C개설도 그러한 조치의무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은 자신이 L/C를 개설할 수 있는 신용상태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상의 대금지급방식을 L/C베이스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은행에서의 신용상태가 당해 계약에서의 지급금액을 충족할 수 없음에도 L/C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체거래차액 및 보관비용 등을 배상해야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신규 무역업자 및 중소기업의 무역계약체결시 중요한 체크포인트이다.

3. 한국의 매수인이 L/C상에 추가조건을 임의로 삽입한 사례¹⁰⁾

1) 사건개요

원고인 호주의 매도인은 피고인 한국의 매수인에게 목화씨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개설한 L/C를 수령하였으나, 그 L/C조건에는 계약시 합의하지

9) 위반당사자의 손해를 피해당사자가 경감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위반당사자에게 있다(Kroll S., Mistelis L., Viscasillas P.P.,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Hart Publishing, 2011, p. 1036).

10) CLOUT Case 1,278 : Republic of Korea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0Na29609 (First instance ---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09Gahap79069), 14 October 2010 : A/CN.9/SER.C/ABSTRACTS/134.

아니한 조건들이 추가되어 있었다. 이에 매도인은 추가기간을 설정한 후 그 추가조건들을 삭제하는 L/C변경을 매수인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그 추가조건들의 삭제를 거부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고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54조에서 규정한 대금지급 조치의무로써 L/C를 개설함에 있어 계약적 조건과 불일치하게 개설한 것은 본질적인 계약위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 추가 조건들을 삭제하여 변경토록 추가기간을 설정하였음에도 이를 매수인이 거부하였으므로, 제64조 제1항 b호¹¹⁾에 의거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였다.

2) 판결내용

법원은 “계약시 합의되지 아니한 추가조건을 L/C에 삽입시키고도 매도인의 삭제요청을 거부한 매수인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을 범한 것이다. 설혹 그 조건들에게는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없었다하더라도, 매도인이 추가기간을 설정하여 그 삭제를 요청한 것을 매수인이 거부한 것은 제64조 제1항 b호에 따른, 매도인의 정당한 계약해제의 사유가 된다”라고 판시하면서 매도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3) 판결의의

매수인이 대금지급 조치의무로써 L/C를 개설하는 경우, L/C의 조건은 계약적 조건에 일치하는 내용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매도인이 L/C를 수령해 보면 합의되지 아니한 또는 무역관습으로 인정될 수 없는 조건을 L/C에 포함시키는 매수인이 간혹 있다.¹²⁾ 이러한 추가조건 삽입 자체가 ‘본질적인 계약위반’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본 사례에서의 매도인과 같이 매수인에게 추가기간을 설정하여 삭제 또는 변경토록 요청하면 된다. 이를 매수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고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다.

11) 동 호에서는 ‘추가기간 내에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12) 본 사례에서의 목화씨와 같은 식품류 또는 화장품이나 의료용품매매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매수인이 자국의 수입규정(기준)을 계약체결 후 뒤늦게 알고 L/C조건에 포함시키거나 매도인에게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4. 한국의 매수인이 부당하게 계약을 해제한 사례¹³⁾

1) 사건개요

원고인 한국의 매수인은 피고인 스페인의 매도인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전에 의류제조에 사용될 옷감의 견본을 수령하여 검토해본 결과, 원료인 옷감의 품질이 ‘표준품질에 불일치하다고 판단’하여,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를 선언하고 다른 매수인으로 부터 대체품을 재구매하였다. 이 후 매수인은 제75조에 의거 원계약금액과 재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대체거래금액과의 차액을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에서의 계약내용에는 물품명세가 불충분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2) 판결내용

법원은 본 사건에서 품질불일치 여부 판단하기 위하여 제35조 제1항을 검토하였으나, 물품명세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동 조 제2항을 적용하여 판단한 결과, 본 거래에 충당될 옷감원료는 ‘통상목적에는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¹⁴⁾ 그러므로 “매수인은 부당하게 계약을 해제한 것이며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체거래금액과의 차액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3) 판결의의

본 사건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옷감원료가 ‘통상목적에 부적합함’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 품질이 통상목적에 불일치함을 입증할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불일치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 본 사건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당하게 계약을 해제한 결과, 본 거래를 통하여 창출할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이 발생하게 되었

13) CLOUT Case 1,284 : Republic of Korea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07GAHAB19698, 5 December 2008 : A/CN.9/SER.C/ABSTRACTS/134.

14) 품질의 일치성에 관한 제35조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하여, 명시적 조건(제1항)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묵시적 조건으로서 통상목적적합성(제2항 a호)조항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품질의 일치성에 관한 적용기준과 구성에 관하여는 하강현,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일치성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2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7, pp.400-403 참조. 동 조의 제2항은 제1항의 부속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Schwenzer교수는 제2항은 일치성의 부속정의(Subsidiary definition of conformity)라고 말한다(Schlechtriem P., Schwenz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II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416).

다.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이익의 상실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매수인은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불일치를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그 불일치의 정도가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상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매수인은 품질불일치의 기준은 명시적 조건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묵시적 조건이 적용되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Ⅲ.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입은 사례

1. 한국의 매수인이 계약부적합 물품을 수령한 사례¹⁵⁾

1) 사건개요

원고인 중국의 매도인은 피고인 한국의 매수인에게 의류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의 매수인은 동 매도인으로부터 수입한 의류를 국내의 고객에게 유통시키는 수입유통업자로서, 동 매도인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 왔다. 그러던 중 매도인이 인도한 의류에 하자가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물품인도가 지체되어, 매수인은 국내의 유통업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그런 연유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을 보류하게 되었고,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2) 판결내용

동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는 수년간 피고에게 의류를 판매해왔기 때문에, 계약 위반시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원고가 국내유통업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제74조에 의거 피고에게 피고가 다른 국내 유통업자에게 지불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다.

15) CLOUT Case 1,282 : Republic of Korea Seoul High Court 2008Na20319 (First instance ---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 2006Gahap22303, Last instance --- Supreme Court 2009Da25982), 23 February 2009 : A/CN.9/SER.C/ABSTRACTS/134.

3) 판결의의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매수인이 자신의 거래고객에게 지불한 위약금을 매도인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손해액산정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제74조에서는 “당사자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로서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한 손해액은, 위반당사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했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아, 그 위반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하였어야 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¹⁶⁾, ‘위반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예견가능한 범위내로 그 손해액을 제한’하고 있지만¹⁷⁾, 본 사건에서의 매도인은 수년간 매수인과 거래관계를 지속해온 바, 매도인이 그 손해배상(위약 벌칙)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은 자신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국내고객에게 지불한 위약배상금에 대해서도 매수인에게 손해액을 배상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은 신뢰할만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유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고객에게 신용을 상실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한국의 매도인이 부당하게 계약해제를 당한 사례¹⁸⁾

1) 사건개요

피고인 한국의 매도인은 원고인 중국의 매수인(원래 한국 매도인의 자회사였다가 독립함)에게 장기간 물품을 공급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은 중국의 다른 매수인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체결한 협정에 만족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16) 손해액 산정의 기본원칙은 피해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즉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은 동 조 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견 가능한 범위내의 금액’으로 제한된다. 동 규정은 강제적 적용규정은 아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간에 손해액 약정액 또는 위약금에 관하여 계약시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Schwenz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1022~1023).

17) PICC에서도 제7.4.4조에서 “불이행당사자는 그가 그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계약체결시에 예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위반당사자의 손해배상금액을 ‘합리적 예견 가능한 범위내의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다. 예견가능한 손해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피해당사자에게 부여된다(Vogenauer S., Kleinheistekamp J., *Commentary on the UNIDOR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 II*,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888).

18) CLOUT Case 1,279 : Republic of Korea Daegu District Court 2007Gahap11525, 29 April 2010 : A/CN.9/SER.C/ABSTRACTS/134.

물품인도를 중지하고 매수인에게 ‘차후 계약을 체결할 때 협정상의 조건들을 다시 협상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하지만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몇주 후 매도인은 ‘재협상할 것을 다시한번 요청’하면서 ‘물품인도를 재개 하겠다’라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협상요구를 거절하고, “일방적인 가격인상요구 및 계약의 해제를 선언함과 동시에,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장래분 물품인도를 거절’하면서, ‘장래분에 대한 계약해제’도 선언해버렸다.

2) 판결내용

법원은 본 사건을 심리하면서 ‘물품공급협정은 수차례 분할하여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되었고 또한 ‘매도인의 인도지연은 일시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의 매수인은 수차례의 매도인의 자격제협상 요구에 대하여 한번도 회신하지도 않으면서 “매도인이 거래재개(물품인도재개) 하겠다”라고 통지했을 때,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원은 매도인의 행위가 ‘본질적인 계약위반’을 구성하는지 검토한 결과, 이는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상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았다.¹⁹⁾ 또한 일시적인 인도지연 및 가격재협상 요구가 “장래분에 대한 계약해제의 충분한 근거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았다.²⁰⁾ 이와 같이 법원은 본 사건에서 매수인은 부당하게 계약해제를 하였음을 밝히면서, 원고인 매수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
- 19) 상대방의 위반정도가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상당하다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기간 설정후의 계약해제(최고후 계약해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범한 계약위반은 그것이 그 계약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정도의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본질적이다. 다만 위반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도 동일한 사정 하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계약위반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다. 물품인도와 관련된 본질적인 계약위반의 기준에 관한 사례연구로는 하강현,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최근의 사례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5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8, pp. 93~96; 하강현, “CISG상의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최근의 사례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21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2. 7, pp. 116~117, 119 참조.
- 20) 분할이행계약에서 장래분할분에 대한 계약해제의 요건에 대하여는 제73조 제2항에서 “(2) 어느 분할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장래의 분할분과 관련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으리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다만 그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를 선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충분한 근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다. 장래분할분의 계약해제에 관한 사례로는 하강현, “국제물품매매에서 분할이행계약의 해제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28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13. 9, pp. 14~18 참조.

3) 판결의의

국제물품매매에서 양 당사자는, 특히 장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격 및 협정 조건들의 재협상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본 사건에서 쟁점은 매도인의 일시적인 당해분의 인도지연이 제25조에서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상당하는지의 여부 및 이를 근거로 장래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매도인의 인도지연 그 자체가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상당한 경우로는, 인도시기가 당해 계약의 중요한 본질인 경우로 국한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인도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기간을 설정한 후 그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지체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매수인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3. 한국의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못한 사례²¹⁾

1) 사건개요

원고인 중국의 매도인은 피고인 한국의 매수인에게 오리털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계약은 물품을 수차례 분할하여 인도하는 조건으로 체결한 분할이행계약이었다. 대금지급조건은 각 분할분을 매수인이 수령하는 즉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고, 매수인은 몇 차례 물품을 지정장소에서 수령한 후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후 매도인은 한 분할분의 인도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를 선언한 후 다른 제3의 매도인으로부터 대체품을 구입하였다. 매수인은 대체거래로 인하여 차액 손해(제75조)가 발생하였고, 항공운송으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였다. 매수인은 장래분할분에 대한 계약의 해제(제73조 제2항)도 선언하면서,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내용

법원은 본 사건에서의 “매도인이 분할이행분 중 한 분할분에 대한 인도를 불이행한 것은 본질적인 계약위반(제25조)을 구성하며, 이는 매수인이 장래분할분의 계약을 해제토록 결론짓게 만드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라고 판단하여, ‘제25조 및 제73조에 의한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인정’하였다. 원고인 매도인이 패소하게 됨에 따라,

21) CLOUT Case 1,281 : Republic of Korea Seoul High Court 2008Na14857 (First instance ---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 2006Gahap6384), 23 July 2009 : A/CN.9/SER.C/ABSTRACTS/134.

매도인은 “매도인이 다른 제3의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대체거래와의 차액 및 항공운송으로 인한 추가비용”까지 매수인에게 배상하게 되었다.

3) 판결의의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것은 자신의 주된 의무이다. 이를 불이행하면 이는 본질적인 계약위반을 범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매수인의 실손해액을 매도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종종 매도인은 ‘물품 안주고 대금 안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제물품매매법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본 사건에서의 매수인도 신뢰할만한 매도인과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적 물리적 정신적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제매매에서는 거래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참조로 국제물품매매에서는 정신적 피해보상과 같은 위자료 성격의 보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²²⁾ 본 사건에서 또 하나 살펴볼 점은, 매수인이 해제된 장래분할분으로 인한 자신의 이익상실분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지금까지 사례연구를 해본 결과, 대체구매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래분에 대한 이익을 예상하여 손해를 배상받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²³⁾

4. 한국의 매도인이 촉박한 선적기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례²⁴⁾

1) 사건개요²⁵⁾

중재 신청인인 중국의 매수인은 피신청인인 한국의 매도인이 1995년 12월 10일 까지 hot rolled coil을 선적하고, 대금은 L/C로 지급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선적기일을 12월 10일로 한 L/C를 수령한 매도인은 ‘선적일자를 12월 23일로

22) 지금까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나 피해기업의 이미지 추락에 대한 보상금을 인정한 판례는 찾아볼 수 없다.

23) 제74조에 의하면 ‘이익의 상실’ 및 ‘결과적 손해’도 손해액에 포함된다. 하지만 계약해제된 장래분에 대하여 이익의 상실분을 손해배상 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24) CLOUT Case 715 : People's Republic of China : PRC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5 December 1997 : A/CN.9/SER.C/ABSTRACTS/67. 본 사건은 우리나라가 국제물품매매법(CISG)에 체결하기 이전에 중재로서 해결된 것으로서, 본 사건을 중재판정한 중국의 국제무역경제 중재위원회에서 준거법으로 국제물품매매법을 채택하여 판정한 사건이다. 이와 같이 동 법은 체결국간의 직접적용 또는 간접적용이 아니더라도 중재법정 또는 법원에서 국제물품매매와 관련된 분쟁을 판단하는 준거법으로서 널리 채택되는 추세이다.

25) 본 사건은 앞에서 살펴본 7건의 사건과는 달리, 한국 법원이 아닌 중국의 중재법정에서 심리된 사건이다.

L/C를 변경'해줄 것을 매수인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선적기일을 12월 20일로 변경하겠다”라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다. 매도인은 L/C변경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12월 20일에 물품을 선적하였고, 물품은 1월 16일에 목적항에 도착하였다. 물품이 도착하자 매수인은 양륙준비는 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가격할인을 요구하였다. 이를 매도인이 거절하여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은 ‘운송선박에게 출항하라’고 통지하였다. 선박이 출항하자 매수인은 “자신은 국내고객에게 재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으로 인하여 재판매이의분 뿐만 아니라, 국내고객에게 위약금을 지불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그러한 금액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게 되었다. 중재법정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12월 23일로 선적일자를 변경하도록 요구한 데 대하여, 자신이 12월 20일로 변경하겠다’라고 통지한 것은 New offer’이며, 이를 “매도인이 승낙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 즉 “선적기일은 12월 10일이 유효하므로, 매도인은 선적시기를 위반하여 계약위반을 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매도인은 “자신은 12월 20일에 선적을 하였고, 이는 제18조 3항26)에 따른 행위에 의한 승낙으로서 승낙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즉 ‘행위에 의한 승낙으로 New offer에 대하여 승낙하였으므로 자신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매도인은 반면에 “매수인이 선적기일을 12월 20일로 변경하는 L/C 변경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이 계약위반을 범한 것이다”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매수인이 도착항에서 ‘물품도착 후 가격할인을 요구하며 수령을 거절한 것’은 ‘물품수령의무를 위반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판정내용

본 사건을 심리한 중국의 중재법정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 사건에서의 매수인은 “L/C를 변경하는데 동의하였고 또한 선적기일을

26) 제18조 제3항에서는 “(승낙의 시기 및 방법) (3) 그러나, 청약을 통하여 또는 당사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확립한 관습이나 또는 관행의 결과로 인하여, 청약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피청약자가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의 지급에 관한 행위와 같은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낙은 그 행위가 수행되는 순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그 행위는 진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승낙의 방식으로 행위에 의한 승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행위의 시기는 승낙의 시기내로 제한된다. 행위에 의한 승낙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 지에 관여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통신이 허락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반대로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Huber P., Mullis A., *The CISG A new textbook for students and practitioners*, European Law Publishers, 2007, p. 96). 참조로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에서는 제2-206조 제2항에서 승낙기한내에 통지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12월 20일로 연기하는 제의를 하고도 L/C 변경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물품수령의무²⁷⁾를 적절하게 이행하지도 아니한 점” 등은 매수인의 과실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의 매도인도 선적행위라는 행위에 의한 승낙을 이행하고도 ‘5일 후인 25일에 매수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중국은 CISG에 서명할 때 제96조(서면요건유보)를 유보²⁸⁾하고 서명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보았다. 또한 ‘도착항에서 매수인의 가격할인 요구가 있었다 할지라도, 매수인이 국내고객에게 재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품의 하역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에게 출항토록 지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보았다. 선하증권(B/L)이나 원산지증명서(C/O) 등 관련 선적서류상의 오기된 선박명을 수정하지 않은 점 등도 매도인의 과실이라고 보았다. 결국, 중재법정은 본 사건에서의 양당사자에게 모두 책임이 있는 쌍방과실로 판단하고, “신청인인 중국의 매수인이 입은 국내재판매에서의 이익 상실분 및 국내고객에게 지불할 위약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피신청인인 한국의 매도인이 입은 이익상실분 및 선박운송비용 등은 매도인이 부담하라”라고 판정하였다.

3) 판정의의

본 사건을 정리해 보면, 중국의 매수인은 ‘당초 선적기일보다 늦게 선적하였으니 가격을 할인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었고, 한국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허용해준 선적기일에 선적하였으므로 가격을 할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국내고객에게 지연된 물품제공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므로, 가격할인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본 사건에서의 한국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원인은 ‘너무 촉박한 선적기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애초부터 충분히 선적가능한 시기로 계약을 했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의 중국 중재법정의 판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27) 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에 관하여는 제60조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조치)도 매수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8) 동 조는 사기방지법이라 불리는 국내법상의 형식요건을 부정하는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다. 동 조의 적용을 유보하고 CISG에 체결한 국가는 국내법상의 형식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Honnold J.O., (Edited and Updated by Flechtner H.M),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09, p. 702).

IV. 요약 및 결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물품매매법에 준거하여 중재판정이나 법원판결이 난 사례들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매수인으로서의 대금지급의무 및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의무 또는 물품수령의무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았고, 매도인으로서는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였거나 물품의 인도의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많았다. 본 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위반 사례연구를 통하여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으로는

첫째, 매수인은 자신의 주된 의무인 대금지급을 거절하면서, 매도인에게 물품인도를 강요할 수는 없다. 설혹 대금지급시기가 약정되지 아니하였다면, 대금의 지급은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와 동시에 맞교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지급거절을 선언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을 범하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의무로써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도 대금지급의무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L/C개설에 실패한 것도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자신이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신용상태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체결시 대금지급방식을 L/C로 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셋째, 매수인은 L/C를 개설할 때 그 조건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시 합의된 내용은 매도인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며, 합의되지 아니한 또는 무역관습으로 인정받기 힘든 ‘중요한 조건이나 서류들을 L/C상의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해당되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넷째, 매수인은 계약체결시 물품의 계약적합 기준을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만일 계약적합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의 통상목적 적합성 기준 또는 특정목적 적합성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매수인의 자의적 기준으로 물품의 계약부적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 사례연구를 통하여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으로는,

첫째, 매도인이 물품인도를 지체하여 매수인이 국내고객에게 위약금을 물게 되었고 이를 매도인이 알고 있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그 위약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이 물품인도를 지체하거나 불이

행하는 경우에 자신이 ‘국내고객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 사정’을 사전에 알려 두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장기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 거래금액에 대하여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장기간 거래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을 확정하더라도 일정기간 별도 ‘재협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분할이행계약에서 당해분에 대한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장래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매도인은 ‘물품인도를 불이행’하는 경우, 매수인이 입은 대체거래손실 및 국내고객에게 지불한 위약금 등을 배상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간혹 ‘물품인도 안하고 대금 받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수인이 입은 ‘실손해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넷째, 국제물품매매에서 종종 매도인이 물품인도지체로 인하여 계약위반을 범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주로 인도(선적)일자를 촉박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다. 자사의 생산능력 등 물리적 시간적 한계를 염두에 두고, ‘충분히 선적(인도) 가능한 일자’를 인도일자로 정하여야 함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기업들의 분쟁에 휘말린 사건들을 살펴보면,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무이행을 해태하였거나 불이행한 경우 등 국제물품매매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가 많다. 또한 신뢰도가 낮은 거래상대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들도 다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물품매매당사자는 동 법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도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만으로 우리 기업들의 CISG관련 분쟁 유형 및 대비방안을 모두 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국제물품매매와 관련된 분쟁을 이해하고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의 무역 또는 통상관련 학과에서는 ‘국제물품매매법’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미래의 무역인들에게 동 법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체에도 무역분야의 직원 재교육시 동 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길 권고해 본다.

참 고 문 헌

- 강정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UN협약(CISG)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입증 책임”, 경제법연구 제10권 1호, 한국경제법학회, 2011.
- 박남규,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물품인도 및 서류교부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 심종석, “CISG하에서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 오현석,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 이수진,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실무적 고려사항”,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진도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 제79조와 부적합물품의 인도”, 국제거래법연구 제24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5.
- 하강현,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일치성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2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7.
- _____,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최근의 사례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5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 _____, “CISG상의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최근의 사례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21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2.
- _____, “국제물품매매에서 분할이행계약의 해제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28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13.
- Huber P., Mullis A., *The CISG A new textbook for students and practitioners*, European Law Publishers, 2007.
- Honnold J.O., (Edited and Updated by Flechtner H.M),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09.
- Kroll S., Mistelis L., Viscasillas P.P.,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Hart Publishing, 2011.
- Letterman G.G., *UNIDROIT's Rules in Practice : Standard International Contracts and Applicable Rule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Schlechtriem P., Schweng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Schweng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Vogenauer S., Kleinheistekamp J., *Commentary on the UNIDOR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Zeller B., *Damages Under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Uniform Commercial Code (UCC).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CISG).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10 (PICC).

CLOUT [Case Law on UNCITRAL Texts] Cases.

ABSTRACT

A Study on the CISG Cases of Korean Firms

Kang-Hun HA

The parties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cluding Korean Firms Should note ;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for the goods and take delivery of them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CISG. The obligations mentioned in Article 53 are primary obligations which are to be fulfilled in the normal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e buyer has to take delivery at the respective place within a reasonable period after this communication since he cannot be required to take delivery immediately. Refusing to take delivery in case of delay not constituting a ground for avoiding the contract makes no sense, since this would lead to even later delivery.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includes taking such steps and complying with such formalities as may be required under the contract or any laws and regulations to enable payment to be mad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frequently prescribe that the buyer has to act in advance, that is before the seller starts the process of delivery. Such acts may be either advance payments or the procurement of securities for payment as letters of credit guarantees.

On the other hand, The seller deliver the goods hand over any documents relating to them and transfer the property in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CISG.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are fit for the purposes for which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are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expressly or impliedly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or that it was un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ement.

The buy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f the failure by the sell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CISG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sell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f the failure by the buy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CISG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Keywords : Duty to Pay the Price, Taking Steps for Payment, The Fitness of Goods, Taking Delivery of Goods, Duty to Deliver the Goods, the Avoidance of Contract, Fundamental Breach